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고,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2, 제39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또는 인을 받도록 규정

-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등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 규정 신설

나.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20조, 제24조의2, 제41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 통보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신설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다. 전입신고서 내 세대원 연락처 기재란 추가 등(안 별지 제15호의2·3서식 개정)

- 전입신고서 내 전입자 연락처 기재란 추가

- 신고자가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닐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추가

- 전입신고서 내 ‘세대주와의 관계’란의 설명을 추가

라.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49조의2, 제60조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신청 시 신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마. 사실조사 증표 개선 및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15조 개정 등)

- 사실조사원 증명서 내 조사원의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추가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바.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30조 개정)

-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

사.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의2 개정 등)

- 가족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서식 내 문구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원행정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28. ~ 5.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인등이 세대주 혹은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확인될 것

제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세대원의 배우자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때에, 사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받아야”를 “받고,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받아야”를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세대주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제1항의 경우,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했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대주(제1항의 경우,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제3항 중 “문자전송”을 “문자전송 등”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를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전입자가 신고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했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신고자 등에 대한 본인확인) ① 제23조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신분증명서 확인
2. 신고자의 지문을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
3.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확인(단, 신고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경우에 한함)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자,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 및 전입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소 변경 사실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로 변경될 때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그 주민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신청 방법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가정폭력피해자”를 “가정폭력피해자(이하 ‘직권 조치 예외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권 조치 예외자가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를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제4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를 “제출(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2 중 “문자전송”을 “문자전송 등”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확인서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하 ‘소재지 내 말소자 혹은 거주불명자’)을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에 소재지 내 말소자 혹은 거주불명자를 전입세대확인서 내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어야 한다.

⑤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받을 경우, 그 열람 또는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중 성(性)만 표기할 수 있다.

제60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관계 서류: 5년

제60조의2제1항에 제7호의2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에 관한 사무

18. 영 제23조의2에 따른 신고자 등에 대한 본인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2에 제3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15조제3항·제4항·제5항, 제30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제4항·제5항, 제60조제25호, 별표 2,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2, 제60조의2제7의2호, 별지 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 신고 대상자(전입자)란 중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 변경 통보서비스란과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동의서란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 신고 대상자(전입자)란 중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 변경 통보서비스란과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동의서란의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 이 신고서는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입자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에 살던 곳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세대주 성명(※ 세대주가 신고할 때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전입 사유 (※주된 1개)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그 밖의 사유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작성방법

-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동의서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 사실이나 주소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식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를 모두 신규 신청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아래 신청인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란에 '동의'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일괄 신청 동의를 했더라도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통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청이 반려됨)

더불어,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아래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란에 '동의' 표시를 해주십시오.

연번	신청인 성명	신청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첨부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 이사한 곳의 전입신고 수리 이전 세대주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수리 이후 세대주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동	층	호	

※ ① 신고자가 전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 아니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 원본 제출)

② 신고자가 현재 사는 곳 세대주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 아니라면, 현재 사는 곳 세대주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자(전입자)

③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신고 수리 이후 현재 사는 곳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예: 본인, 배우자, 자, 손 등)

④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은 3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입자확인 (서명 또는 인)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 동의	[] 동의
2					[] 동의	[] 동의
3					[] 동의	[] 동의
4					[] 동의	[] 동의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입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6.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동의서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사실이나 주소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식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를 모두 신규 신청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1쪽의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란에 ‘동의’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일괄 신청 동의를 했더라도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통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청이 반려됨).

더불어,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1쪽의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란에 ‘동의’ 표시를 해주십시오.

첨부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전입 []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3쪽 중 1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 이사한 곳의 전입신고 수리 이전 세대주의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수리 이후 세대주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동 층 호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① 신고자가 전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 아니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단, 전입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 원본 제출)

② 신고자가 현재 사는 곳 세대주의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 아니라면, 현재 사는 곳 세대주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자(전입자)

③ 세대주와의 관계란에는 전입신고 수리 이후 현재 사는 곳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예: 본인, 배우자, 자, 손 등)

④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은 3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영주 국가 (지역,재외국민만 해당)	체류 자격 (재외국민만 해당)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전입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동의 []동의
2							[]동의 []동의
3							[]동의 []동의
4							[]동의 []동의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 | |
|----------------------------------|----------------------------|
|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 [] 그 밖의 사유 () |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이민 출국 또는 현지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 일부가 전입하면서 전입지의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전입자)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체류 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商用),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 '연락처' 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니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희망하는 사람만 연락처를 쓰기 바랍니다.
-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 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것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동의서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법」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 제41조의2 및 제47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사실이나 주소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전송 등의 방식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를 모두 신규 신청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1쪽의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 란에 '동의' 표시를 해주십시오(단, 일괄 신청 동의를 했더라도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통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청이 반려됨).

더불어,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일괄 신규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1쪽의 '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 · 주소 변경 통보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란에 '동의' 표시를 해주십시오.

첨부서류

1. 세대주(전입신고 · 세대주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학령 아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8 cm	사실조사원 증명서	
	발급번호	사 진 3 cm 2.5cm
	성 명	
	증명서 유효기간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함.		
○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6cm

60mm × 80mm [백상지 (150g/㎡)]

주의사항

1.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이 증표는 사실조사 시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이 증표의 소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0mm × 80mm[백상지(150g/㎡)]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성명	

1. 귀하께서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이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간)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나오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3) 준비해야 할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4.5cm).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문의전화: 담당자:).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자르는 선

제 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수령증

발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기간		세대주 성명		
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비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외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u>	2. <u>외국인등이 세대주 혹은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u>

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신 설>

<신 설>

서를 제시해야 ---. 이 경우,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 이 경우, 세대주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제1항의 경우,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했을 경우에는 전

③ (생략)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정의 내용이 세대주의 변경인 경우로서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통보해 줄 것을 변경 전 세대주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3조(전입신고)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

자적 방법으로 세대주(제1항의 경우,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정정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문자전송 등 -----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전입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제시해야 -----

--. 이 경우, 전입자가 신고자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고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했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3조의2(신고자 등에 대한 본인 확인) ① 제23조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신분증명서 확인
2. 신고자의 지문을 법 제30조에 따른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
3.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 설>

신분을 확인(단, 신고가 전자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경우
에 한함)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배우
자 또는 직계혈족 관계를 증명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자,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
람 및 전입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소 변경 사실의 통
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
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
고로 변경될 때마다 주소가 변
경되었다는 사실을 그 주민에게

<단서 신설>

다만, 직권 조치 예외자가 주소
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
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③ (생략)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u>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 ⑤ (생략) 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이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u> ②·③ (생략)	<u>를 통하여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를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변경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u>-----.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① ----- ----- ----- ----- ----- <u>제출(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생략)

②·③ (생략)

<신청서>

제41조의2(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

----- 문자전송 등-----
-----.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

-----.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의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확인서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하 ‘소재지 내 말소자 혹은 거주불명자’)을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에 소재지 내 말소자 혹은 거주불명자를 전입세대확인서 내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어야 한다.

⑤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받을 경우, 그 열람 또는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전입세대확인서에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중 성(性)만 표기할 수 있다.

⑥ ----- 제5항-----

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24. (생 략)

<신 설>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
-----.

1. ~ 24. (현행과 같음)

2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관계 서류: 5년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8. ~ 17.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제41조의2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 제47조제8 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사실 통 보 서비스와 제24조의2제1항 에 따른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에 관한 사무</u> 8. ~ 17. (현행과 같음) <u>18. 영 제23조의2에 따른 신고 자 등에 대한 본인확인에 관 한 사무</u>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7